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분담금액) <u>영 제31조제1항</u> <u>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</u> <u>는 금액”이란 책임보험의 보험</u> <u>료(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</u> <u>제분담금을 말한다)의 1,000분</u> <u>의 10을 말한다.</u>	제11조(분담금액) <u><삭 제></u>